- 2021회계연도 -

연천군 결산검사 의견서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 기간 : 2022. 4. 8. - 4. 27 (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위원: 이 영 애(군 의 원)
- 검사위원: 이 광 수(공인회계사)
- 검사위원: 이 종 목(前 공무원)
- 검사위원: 강 영 구(前 공무원)
- 검사위원: 박 성 수(前 공무원)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연천군수 귀하 **2022년 4월 27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연천군 의회로부터 연천군 2021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2년 4월 8일부터 2022년 4월 27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1회계연도 연천군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 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연천군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 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연천군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채권 및 채무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이 영 애	(서명)
검사위원	이 종 목	(서명)
검사위원	이 광 수	(서명)
검사위원	강 영 구	(서명)
검사위원	박 성 수	(서명)

목　　차

Ⅰ. 결산검사 경과 ---------- 1

Ⅱ. 결산검사 총괄현황 ---------- 3

1. 연천군 재정의 개황 ---------- 4

2. 세입·세출 결산 ---------- 8

3. 기금 결산 ---------- 18

4. 재무제표의 결산 ---------- 21

5. 성과보고서 ---------- 23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24

Ⅲ.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 27

Ⅳ.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 49

Ⅰ. 결산검사 경과

Ⅰ.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22. 4. 8 ~ 4. 27 (20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대표위원	이영애	결산검사 총괄	
검사위원	이광수 박성수	재무재표 기금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금고 결산	
검사위원	이종목 강영구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구 분	일 자 별	내용	비고
결산검사 및 현장 확인	2022. 4. 8 ~4. 27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기금결산보고서 4. 재무제표 5. 성과보고서 6. 금고의 결산 7. 현장 확인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현지 확인 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 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간 토의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연천군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천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반회계	세입	477,171,172	582,653,243	759,820,350	753,976,539	759,357,263
	세출	355,637,471	383,107,783	563,053,787	593,008,131	626,455,597
	결산상잉여금	121,533,701	199,545,460	196,766,563	160,968,408	132,901,666
특별회계	세입	89,193,423	111,672,331	123,379,131	132,307,676	111,135,958
	세출	50,517,088	54,768,004	56,682,657	78,750,855	68,784,342
	결산상잉여금	38,676,335	56,904,327	66,696,477	53,556,820	42,351,616
기 금	수입	20,586,500	19,657,631	72,580,830	89,214,427	132,006,519
	지출	2,687,339	9,005,193	5,246,579	19,607,530	11,957,377
	결산상잉여금	17,918,580	10,652,438	67,334,251	69,606,897	120,049,142
총 계	세입(수입)	586,951,095	713,983,205	995,780,311	975,498,642	1,002,499,740
	세출(지출)	408,841,898	446,880,980	624,983,023	691,366,516	707,197,316
	결산상잉여금	178,109,197	267,102,225	330,797,291	284,132,126	295,302,424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현연도에 16,553,857원이다.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천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자치단체 채무 계	176,000	88,000	-	-	-
공 채	-	-	-	-	-
차입금	0	0	-	-	-
채무부담행위	-	-	-	-	-
지방공기업 채무	176,000	88,000	-	-	-
채무총합계	**176,000**	**88,000**	-	-	-

연천군의 채무는 예산대비 0%로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2) 재정건전성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훈령)에 의하면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지표를 주의단계나 심각단계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관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주의 기준	심각(위기) 기준
채무 관리	① 예산대비채무비율	지방채무 잔액 / 총예산	25%초과	40%초과
	②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채무 상환액 / 일반재원	12%초과	17%초과
세입 관리	③ 지방세 징수액현황	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 / 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50%미만	0%미만
자금 관리	④ 금고잔액 현황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 /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20%미만	10%미만
공기업	⑤ 공기업 부채비율	부 채 / 순 자 산	400%초과	600%초과
	⑥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연천군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지는 않는다.**

③ **<채무관리>** 예산대비 채무비율 및 채무상환액 비율

(단위 :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대비 채무비율	0.03	0.01	-	-	-
채무상환비 비율	0.97	0.99	-	-	-

④ **<세입관리>** 지방세 징수액 현황

지방세 징수액 현황	:	61,421,273,790원 / 63,434,647,570원	=	96.8%

⑤ **<자금관리>** 금고잔액 현황

금고잔액 현황	:	132,901,666,461원 / 160,968,408,589원	=	82.5%

⑥ **<공기업>** 공기업 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	0원 / 0원	=	0%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규정의 주의, 심각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다음과 같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본예산 반영)

$$\text{재정자립도} = \mathbf{18.3\ \%} \left[\frac{111{,}828{,}199{,}641\text{원}}{610{,}168{,}406{,}621\text{원}} \times 100 \right]$$

※ 지방세 :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과년도 수입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 **재정자립도**는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되나 당초 예산, 일반회계기준 세입 통계목 변동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text{재정자주도} = \mathbf{69.8\ \%} \left[\frac{426{,}211{,}620{,}372\text{원}}{610{,}168{,}406{,}621\text{원}} \times 100 \right]$$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조금

☞ 이러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낙관적인 세수전망에 의한 작자예산 편성을 하지 말아야 하고 지방채 발행억제 및 기존 채무축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2. 세입 . 세출 결산

(1) 총 괄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전년도조성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 (C=A-B)
합계	**948,945,285**	**919,632,843**	**707,197,316**	**295,302,423**
일 반 회 계	756,618,370	759,357,263	626,455,597	132,901,666
공기업특별회계	106,998,295	108,668,469	66,579,013	42,089,455
기타특별회계	2,461,723	2,467,489	2,205,329	262,160
기금	82,866,897	49,139,622	11,957,377	120,049,142

회 계 별	현년도 채무상환	이월액(D)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계	**0**	**72,759,552**	**16,003,708**	**41,173,365**	**7,031,791**	**158,596,163**
일반회계	0	61,552,423	13,623,953	19,681,701	7,014,622	31,028,965
공기업 특별회계	0	11,147,129	2,379,755	21,491,664	8,755	7,324,311
기타 특별회계	0	60,000	0	0	8,414	193,745
기금	0	0	0	0	0	120,049,142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19,632,843천원으로 예산현액 948,945,285천원 보다 29,312,442천원 감소되었다.
세입결산액은 919,632,843천원, 세출결산액은 707,197,316천원으로 차인잔액 212,435,527천원이다.
이중 명시이월비 72,759,552천원, 사고이월비 16,003,708천원 및 계속비 41,173,365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7,031,791천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서 현년도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158,596,163천원이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기금을 포함한 순세계 잉여금은 158,596,163천원임이 확인된다.

(2) 일반회계

가. 세 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결손처분등)	미 수 납 (다음연도이월액)
결산액	756,618,307	764,144,408	759,357,263	263,767	4,523,377
결 산 확인액	756,618,307	764,144,408	759,357,263	263,767	4,523,377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실제 수납액 759,357,263천원으로 세입예산액 756,618,307천원보다 2,738,956천원이 더 징수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징수와 관련하여 356,13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221,016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62%로써 부진하므로 징수대책을 강화하여야 하겠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목표액을 초과징수 하였으나, 71,064천원이 불납결손처리 되었으며 미수납액이 2,702,706천원으로서 각 담당 실.과.원.소에서 적극적인 징수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여야 하나 부족한 부분이 있음.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천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759,357,263	759,357,263	0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천원)

연도별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 대비수납액	징수결정대비 불납결손액
2020	579,076,945	760,668,945	753,976,539	1,046,268	131%	99%	0.14%
2021	**639,898,577**	**764,144,408**	**759,357,263**	**263,767**	**119%**	**99%**	**0.03%**
증 감	**60,821,632**	**3,475,463**	**5,380,724**	**△782,501**	**6%**	**154%**	**23%**

전년대비 징수결정액은 3,475,46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수납액은 전년대비 5,380,724천원 증가한 759,357,263천원이 수납되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대비 782,501천원 감소하였고,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합 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부족	체납처분중지
263,767	144,402	1,418	65,817	1,542	50,588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 계		**639,898,557**	**764,144,408**	**759,357,263**	**263,767**	**4,523,377**
지방세	**소 계**	**59,584,421**	**63,434,647**	**61,421,273**	**192,702**	**1,820,671**
	주민세	540,000	609,177	578,219		30,959
	재산세	6,700,000	7,319,364	7,022,456	157	296,750
	자동차세	28,970,000	30,119,692	29,773,698	652	345,342
	담배소비세	5,510,000	5,427,223	5,427,223		
	지방소비세	10,199,421	10,235,222	10,235,222		
	지방소득세	7,000,000	8,006,884	7,742,712		264,172
	지난년도수입	665,000	1,717,085	641,743	191,893	883,448
세외수입	**소 계**	**40,376,588**	**44,744,108**	**41,970,337**	**71,065**	**2,702,706**
	재산임대수입	206,477	211,857	137,332		74,525
	사용료수입	3,399,320	3,538,823	3,501,641		37,182
	수수료수입	5,546,700	6,014,128	5,980,758		33,370
	사업수입	3,306,300	3,666,003	3,666,003		
	징수교부금수입	1,274,000	1,386,932	1,386,932		
	이자수입	1,300,000	1,377,586	1,375,483		2,103
	재산매각수입	7,358,612	7,495,514	7,495,514		
	보조금반환수입	1,700,000	1,685,149	1,684,761		388
	과징금및과태료	961,980	1,438,388	1,019,578		418,810
	기타수입	13,573,199	14,059,372	14,039,800		19,572
	지난연도수입	1,750,000	3,870,356	1,682,535	71,065	2,116,756
지방교부세		**182,647,795**	**182,173,620**	**182,173,620**		
조정교부금 등		**126,750,000**	**126,595,746**	**126,595,746**		
보조금		**179,019,555**	**178,861,589**	**178,861,58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520,198**	**168,334,698**	**168,334,698**		
지방채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8.08%인 61,421,273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5.52%인 41,970,337천원이 수납되었다.

지방교부세는 23.9%인 182,173,620천원, 조정교부금은 126,595,746천원(16.6%) 보조금은 178,861,589천원(23.5%),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8,334,698천원(22.1%)이 수납되었다.

나. 세 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반납금	이월액	불용액
결산액	639,898,557	756,618,307	626,455,597	8,298,997	94,858,078	27,005,635
결산 확인액	639,898,557	756,618,307	626,455,597	8,298,997	94,858,078	27,005,635
차액	0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639,898,557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94,858,078천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사용액 293,680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56,618,307천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총 22건 879,005천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30년이상 장기근속 포상연수 여비지급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 가벽, 출입문 설치 및 미술품(그림)구입 등 예산집행을 위한 과목변경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었음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에 해당하는 626,455,597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94,858,078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61,552,423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3,623953천원이었으며 이중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8,298,997천원이 포함되어 있음

계속비이월은 2건, 19,681,701천원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계속 진행 중인 사업으로 특이사항 없음.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5%에 해당되는 27,005,635천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집행계획변경 및 낙찰차액에 기인함.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626,455,597	626,455,597	0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0 지출액	2021 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액	비율
합 계	**593,008,131**	**756,618,307**	**626,455,597**	**82%**	**33,447,466**	**5.6%**
일반공공행정	56,235,174	79,894,256	77,353,537	96%	21,118,363	37%
공공질서및안전	17,918,883	30,112,128	22,097,308	73%	4,178,425	23%
교육	5,322,597	6,706,286	6,527,672	97%	1,205,075	22%
문화및관광	31,713,956	34,187,957	23,975,953	70%	△7,738,003	△24%
환경보호	44,499,202	49,870,539	43,871,808	87%	△627,394	1.4%
사회복지	94,179,664	99,570,252	94,797,649	95%	617,985	0.6%
보건	10,982,434	12,044,478	10,671,149	88%	△311,285	△2.8%
농림해양수산	104,599,370	72,717,135	60,574,933	83%	△44,024,437	△42%
산업·중소기업	17,545,124	13,751,357	12,626,503	91%	△4,918,621	△28%
교통및물류	57,103,804	78,311,582	64,157,970	81%	7,054,166	12%
국토및지역개발	91,928,254	210,401,852	145,705,202	69%	53,776,948	58%
예비비	84	699,626				
기타	60,979,585	68,350,859	64,095,913	93%	3,116,328	5.1%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①농림해양수산 60,574,9330천원, ②사회복지 94,797,649천원, ③국토및지역개발 145,705,202천원, ④기타 64,095,913천원, ⑤교통및물류 64,157,970천원, ⑥일반공공행정 77,353,537천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분야는 국토및지역개발 53,776,948천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2%가 감소하였다.

(3) 특별회계(직영 공기업포함)

가. 세 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계		109,460,018	111,620,020	111,135,958		484,062
특별회계	상수도	58,039,755	58,154,045	57,797,781		356,264
	하수도	48,958,540	50,950,423	50,870,688		79,735
	의료급여기금	839,000	852,619	851,642		977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사업	680,000	720,443	673,357		47,08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9,175	68,942	68,942		
	장기미집행도시계획	605,355	605,355	605,355		
	댐주변지역지원사업	268,193	268,193	268,193		
결산 확인액		109,460,018	111,620,020	111,135,958		484,062
차액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111,135,958천원은 예산현액의 101%로서 1,675,940천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원인자부담금 증가에 기인하며, 징수 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5%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6% 낮아졌다.

○ **세입결산액**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은 다음과 같이 부합되었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천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11,135,958	111,135,958	0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나. 세 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불용액
합계	**65,665,000**	**109,460,018**	**68,784,342**	**35,018,548**	**8,755**	**5,648,373**
공기업특별회계	**63,507,000**	**106,998,295**	**66,579,014**	**34,958**	**341**	**5,460,392**
상수도사업	39,068,000	58,039,755	35,448,100	19,819,866	341	2,771,448
하수도사업	24,439,000	48,958,540	31,130,914	15,138,682		2,688,944
기타특별회계	**2,158,000**	**2,461,723**	**2,205,328**	**60,000**	**8,414**	**187,981**
의료급여기금	839,000	839,000	829,791		8,048	1,161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사업	680,000	680,000	497,497	60,000		122,50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9,175	69,175	68,396		366	413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	301,632	605,355	604,598			757
주택사업특별회계 댐주변지역지원사업	268,193	268,193	205,046			63,147
결산확인액	**65,665,000**	**109,460,018**	**68,784,342**	**35,018,548**	**8,755**	**5,648,373**
차액	0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예산현액은 109,460,018천원 지출액은 68,784,342천원, 이월액은 35,018,548천원이며 이중 5,648,37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다.

○ **세출결산액**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68,784,342	68,783,878	464

세출계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본 연도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합 계	**24**	**41,173,364**	**203**	**72,639,549**	**57**	**16,003,708**
일반회계	8	19,681,701	184	61,552,423	48	13,623,95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	9,795,065	13	7,645,044	9	2,379,75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	11,696,598	6	3,442,082		
장마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						

검사결과 계속비이월 24건 41,173,364천원, 명시이월 203건 72,639,549천원 사고이월 57건 16,003,708천원으로 확인되었다.

3. 기금 결산

본년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기 금 현 황

(단위:천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증가또는감소액 계 ㉯=㉰-㉱	조성액 ㉰	사용액 ㉱	
계	**82,866,897**	**37,182,245**	**49,139,622**	**11,957,377**	**120,049,142**
통합관리기금	13,482,751	1,174,837	1,350,979	176,142	14,657,588
남북교류협력기금	3,364,811	454,504	533,192	78,687	3,819,316
재난관리기금	2,226,705	368,375	637,093	268,718	2,595,080
노인복지기금	2,037,733	13,405	27,405	14,000	2,051,138
양성평등기금	1,102,052	△5,765,000	12,143,000	17,908,000	1,096,287
체육진흥기금	2,341,495	114,196	194,196	80,000	2,455,691
식품진흥기금	38,545	605	32,114	31,508	39,150
농업발전기금	2,465,916	449,921	2,049,921	1,600,000	2,915,838
농기계임대사업기금	915,069	167,920	3,146,131	2,978,210	1,082,989
향토장학기금	8,513,356	630,752	780,752	150,000	9,144,109
옥외광고정비기금	349,067	△120,918	316,282	437,201	228,149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23,652	51,924	176,924	125,000	75,576
재정안정화기금	46,005,740	33,882,485	39,882,485	6,000,000	79,888,226

2021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은 82,866,897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20,049,142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11,957,377천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다.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기금조성.사용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16,756,790	9,263,580	11,101,510	75,689,251	**82,866,897**	
당해연도 조성액	3,829,709	10,394,050	61,479,320	13,525,175	**49,139,622**	
당해연도 사용액	2,687,338	9,005,193	5,246,579	19,607,530	**11,957,377**	
당해연도말 조성액	**17,918,580**	**10,652,438**	**67,334,251**	**69,606,897**	**120,049,142**	

전년도말 조성액 82,866,897천원과 당해연도 49,139,622천원을 조성하여 11,957,377천원을 사용하여 120,049,142천원이 조성되었음.

<기금운용 현황>

(단위:천원)

구분	전년도 (사고 등)	수입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 등)
합계	82,866,897	49,139,622	11,957,377	120,049,142
통합관리기금	13,482,751	1,350,979	176,142	14,657,588
남북교류협력기금	3,364,811	533,192	78,687	3,819,316
재난관리기금	2,226,705	637,093	268,718	2,595,080
노인복지기금	2,037,733	27,405	14,000	2,051,138
양성평등기금	1,102,052	12,143	17,908	1,096,287
체육진흥기금	2,341,495	194,196	80,000	2,455,691
식품진흥기금	38,545	32,114	31,508	39,150
농업발전기금	2,465,916	2,049,921	1,600,000	2,915,838
농기계임대사업기금	915,069	3,146,131	2,978,210	1,082,989
향토장학기금	8,513,356	780,752	150,000	9,144,109
옥외광고정비기금	349,067	316,282	437,201	228,149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23,632	176,924	125,000	75,576
재정안정화기금	46,005,740	39,882,485	6,000,000	79,888,226

검사결과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의 본년도말 현재액은 120,049,142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37,182,245천원이 감소한 것이다. 본년도에 기금의 지출액은 11,957,377천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다.

4. 재무재표의 결산

2021회계연도 연천군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전년대비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469,438**	**2,592,713**	**123,275**	**4.9%**
Ⅰ. 유동자산	295,052	290,835	△4,217	-
Ⅱ. 투자자산	5,307	6,237	930	-
Ⅲ. 일반유형자산	102,192	112,315	10,123	-
Ⅳ. 주민편익시설	492,249	521,938	29,689	-
Ⅴ. 사회기반시설	1,571,174	1,657,964	86,790	-
Ⅵ. 기타유동자산	3,464	3,424	△40	-
부 채	**21,746**	**17,809**	**△3,937**	**△18.1%**
Ⅰ. 유동부채	12,479	9,921	△2,576	-
Ⅱ. 장기채입부채	-	-	-	-
Ⅲ. 기타비유동부채	9,249	7,888	△1,361	-
순자산	**2,447,692**	**2,574,904**	**△126,108**	**△5.1%**
Ⅰ. 고정순자산	2,166,650	2,293,222	△126,572	-
Ⅱ. 특정순자산	71,911	108,667	36,756	-
Ⅲ. 일반순자산	209,131	173,014	△36,117	-

재정상태에서 전체자산은 4.9%증가, 전체부채는 유동부채의 감소로 18.1%감소되었으나 순자산은 5.1% 감소하였음. 특히 장기채입 부채가 없어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건전함.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사업순원가 (가-나)	211,487	220,269	8,782	4.2%
가.사업총원가	432,108	418,377	△13,731	△3.1%
나.사업수익	220,621	198,108	△22,513	△10.2%
Ⅱ. 관리운영비	73,950	68,517	△5,433	△7.3%
Ⅲ. 비배분비용	11,896	18,133	△6,237	△52.5%
Ⅳ. 비배분수익	18,079	30,883	12,804	70.8%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279,254	276,036	△3,218	△1.1%
Ⅵ. 일반수익	311,152	381,178	△70,026	△22.5%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31,898**	**105,141**	**73,243**	**229.6%**

○ 연천군의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 순원가는 사업총원가 418,377백만원에서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98,108백만원을 차감한 220,269백만원이다.

2021회계연도 연천군의 재정운영결과(총비용-총수익)는 105,141백만원으로 전년도의 31,898백만원보다 73,243백만원 증가하였음

5.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개,%)

부서명	전략 목표 수	정 책 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비고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 달성 수 (B)	미달성수	달성률 (A/B)	
계	25	70	169	134	31		
기획감사담당관	1	1	6	5	1		
행정담당관	1	3	9	5	4		
문화체육과	1	3	4	3	1		
관광과	1	4	12	10	2		
복지정책과	1	4	8	7	1		
사회복지과	1	5	14	10	4		
세무과	1	1	6	6	0		
회계과	1	1	4	3	1		
투자유치과	1	5	6	4	2		
지역경제과	1	5	13	11	2		
농업정책과	1	4	6	6	0		
축산과	1	4	17	17	0		
산림녹지과	1	3	7	7	0		
안전총괄과	1	2	10	8	2		
건설과	1	5	6	2	0		
도시과	1	2	4	4	0		
건축과	1	1	4	3	1		
환경보호과	1	3	4	3	1		
종합민원과	1	4	7	7	0		
보건의료원	1	2	8	4	4		
농업기술센터	1	2	6	4	2		
의회사무과	1	1	3	2	1		
통일평생교육원	1	5	5	3	2		

※ 대상 : 본청, 사업소, 의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천군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세무과 등 9개 과는 100%를 달성한 반면, 행정담당관 등 14개 부서는 31개 지표는 미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년보다 과도한 목표설정으로 달성 지난으로 목표 설정 및 성과지표의 설정 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지표들로 확인되었고, 성과 분석에도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실적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

채권현황

(단위: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5,110,489**	**879,872**	**127,068**	**5,863,293**
일반회계		2,625,446	37,854	115,433	2,547,867
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	-			
	하수도	-			
기타특별회계		395,053	16,170	11,635	399,588
	주택사업	-			
	저소득주민생활	-			
	의료급여	395,053	16,170	11,635	399,588
기금		2,089,990	825,848	-	2,915,838
	농업발전기금	2,089,990	825,848	-	2,915,838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863,293천원으로 확인되었다.

(2) 채무

채무현황

(단위: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	-			-
일반회계		-	-			-
공기업특별회계		-	-			-
	하수도사업	-	-			-

검사결과 채무는 없음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채무의 상환 예정은 다음과 같다.

채무상환 예정액

(단위: 천원)

구분	채무액	2021	2022	비 고
합계 (전년도이월액)	-	-	-	
공기업특별회계	-	-	-	
차입금	-	-	-	
채무부담행위 (연도말잔액)	-	-	-	

(3) 공유재산

본 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계		**1,012,625,605**	**58,057,023**	**12,965,721**	**1,057,716,908**
행정 재산	공용재산	211,326,421	15,757,264	222,171	226,861,535
	공공용재산	680,671,493	36,631,801	5,492,293	711,811,000
	기업용재산	3,639,673	4,708	-	3,644,381
	보존용재산	32,947,609	533,175	217,013	33,263,771
	소계	**928,585,196**	**52,926,969**	**5,931,477**	**975,580,688**
일반재산		84,040,409	5,130,053	7,034,243	82,136,220

검사결과,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45,091,303천원이 증가한1,057,716,908천원이다.

(4) 물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량	1,111	183	68	1,226
금액	12,067,878	1,629,964	745,144	12,952,698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 보다 884,820천원이 증가한 12,952,698천원이 확인되었고 증가 사유는 미니버스,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쓰레기 수거용 트럭 등의 신규 취득으로 발생된 것이다.

Ⅲ.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2021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목록

구분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내용	처리부서	비고
1	기 내시된 국비보조사업 사업 시행 철저	권고	환경보호과	
2	국비보조사업 추진 미흡	개선	관광과	
3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축제 입장료 징수건의	건의	관광과, 농업기술센터	
4	겨울철 대비 제설제의 충분한 확보(예비비관련)	권고	건설과	
5	설계변경 과다(100% 이상 증액 사업)	개선	안전총괄과,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도시과	
6	자료작성 철저	개선	기획감사담당관	
7	사고이월액 과다 및 과소 이월	개선	관광과, 투자유치과, 건설과, 도시과	
8	마무리 추경 등 성립된 예산의 명시이월 적용 검토 철저	개선	기획감사담당관, 축산과	
9	레클레스 문화마을 경상적 보조관리 미흡	개선	문화체육과	
10	세입예산 세수추계 미흡	권고	세무과	
11	농업정책사업비 추진 예산관리 미흡	권고	농업정책과	
12	환경폐기물 예산관리 미흡	개선	환경보호과	
13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개선	개선	각실과원소 공통	
14	장애인 지원센터 지원금 관리 미흡	개선	사회복지과	
15	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	권고	행정담당관, 건설과,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16	통합계정기금·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관리 미흡	개선	기획감사담당관	
17	보전수입 항목 구분표기	개선	세무과	
18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액 적정성 제고	건의	복지정책과,지역경제과, 도시과, 건설과	
19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퇴직급여충당부채 추계액 누락	개선	행정담당관	
20	기금 일계표 불부합	권고	종합민원과, 통일평생교육원, 농업정책과, 투자유치과	
	이하여백			

[1] 기 내시된 국비보조사업의 사업시행 철저 (권고)

[현황 및 문제점]

(단위:천원)

추진부서	단위사업	목	사업명	총 사업비	보조금 수령	집행액	잔액
환경 보호과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민간인 재해 복구 및 활동보상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72,000 (국비36,000) (군비36,000)	28,320 (국비14,160) (군비14,160)	-	28,320

○ 『결산서 첨부서류』 (16)보조금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16)-2 2021 회계년도 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 중, 환경보호과 소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479페이지)사업을 살펴보면,

○ 사업이 확정된후 사업의 변경에 따라, 변경사업 과목으로 예산을 전용하였으며, 나머지 예산 전액을 잔액처리 하여, 당초 예산계상의 목적이 바뀌어 사용된 경우가 있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추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2] 국비 보조사업 추진 미흡 (개선)

[현황 및 문제점]

(단위:천원)

추진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불용액
관광과	지역특화 레저스포츠 활성화(국비)	행사운영비	150,000	-	80,000	70,000

○『결산서 첨부서류』 (13)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 (13)-1 사업별 이월현황, 관광과(164페이지)에 따르면

○ 상기 현황과 같이 15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한후 80,000천원을 명시이월하고 70,000천원을 잔액처리 하였음.

○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군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통하여 상급기관 재원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적극행정을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추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3]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축제 입장료 징수 [건의]

[현황 및 문제점]

(단위:천원)

추진부서	축제명	예산액	집행액	입장료 징수여부	미 징수사유
관광과	구석기축제	768,522	660,977	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축제추진위원회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국화전시회	343,535	334,963	부	조례 미지정

○ 연천군의 군정방침을 살펴보면, 그중 하나가 "지역현실에 맞는 다양하고 우수한 일자리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 교육, 문화자원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찾아오는 연천조성을 함으로써 **혁신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힘이 실려있습니다.

○ 위와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역량을 주민의 소득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집중하여야 할 것이며, 그중 하나가 골목상권의 활성화 등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에 있을 것입니다.

○ 인근 시군의 예를 살펴보면, 화천군의 경우, 송어축제를 실시함에 있어 일정한 입장료를 징수한 후 1/2 정도를 화천지역의 음식점, 특산물 매입에 사용토록 되돌려 줌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연천군의 경우 상기 명기된 사항과 같이 전부 무료로 실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쉬운점이 있다는 주민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관외 관람자에게 만이라도 유료화를 검토해 볼 만하다고 사료 됩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 위 미징수 사유와 관련하여, 축제 입장료 유료화를 실시할 경우의 장단점 및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신후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4] 겨울철 대비 제설제의 충분한 확보(예비비 관련) [권고]

[현황 및 문제점]

(단위:천원)

추진부서	사업명	예산액	총소요 예산액	부족액	예비비	예비비 사유
건설과	도로유지관리	70,500	222,320	151,820	151,820	폭설로 인한 제설제 부족

○ 『결산서』 (제5장) 예비비 지출. 나.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341페이지)에 따르면 2020년도말에서 2021년초까지 폭설로 인하여 제설제가 부족해짐에 따라 당초예산액 보다 215% 증액된 금액을 예비비로 사용한 경우가 있었는바, 이는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 예산 소요예측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겨울철의 폭설로 인한 빙판길 제설제 확보는 교통사고 예방등 중요한 사업인바, 제설제 예산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충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 추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5] 설계변경 과다(100% 이상 증액 사업) [개선]

[현황 및 문제점]

(단위:천원,%)

추진부서	사업명	당초 예산액	증액	최종 예산액	증감률	증감 사유
안전총괄과	센터폐기물수거 및 청소용역	128,061	348,034	476,095	271.8	확진자 증가에 따른 증원
사회복지과	미롱이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6,296	14,020	20,316	222.7	동력설비 추가
문화체육과	파크 골프장 주차장 전기공사	65,723	85,186	150,909	129.6	주차장 쇄석 골재 포설
도시과	한탄강 오토캠핑장 둘레길 재정비	10,080	22,922	23,930	227.4	페콘크리트 물량증가

○ 2021년도 연천군 설계변경 사업현황 중 100%이상 증액된 사업을 살펴본바, 위와 같이 조사되었음.

○ 각 사업별 부득이한 증액 사유가 있겠으나, 100% 이상의 증액이 발생하였다면 당초 예산확보 당시의 예산 수요판단에 완벽을 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추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고, 처리결과는 결산 주무부서의 실과원소 및 읍면 통보로 갈음 처리 하시기 바람.

[6] 자료작성 철저 [개선]

[현황 및 문제점]

(단위: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총 사업량	기투자	당해연도
연천BIX산업단지 조성사업	20,317	600,019㎡	111,511	11,612

○ 결산검사서는 전년도에 발생한 세입세출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회계법인을 통하여 확인받아, 추후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으로서, 표기의 정확성이 필요하다 하겠으나,

○ 2021회계년도 결산서 첨부서류, (8) 주요사업추진 현황(102페이지)에 따르면 위 표와 같이 기투자비와 당해연도 사업비의 합이 총사업비를 초과하고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이는 총사업비와 기반조성사업에 소요된 예산을 제외한 순수 단지조성사업비만 기재한 것으로 사료되어,

○ 총사업비난에 기반조성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괄호 내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계수상의 오해를 방지 하여야 할 것임.

[7] 사고이월액 과다 및 과소 이월 [개선]

[현황 및 문제점]

(단위:건수)

해당실과	과다이월	과소이월
4개과	5	11

○ 『결산서 부속서류』 13.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 13-2 이월사유별 현황. 나. 사고이월(일반회계, 193페이지)분야와 관련됨.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회계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위 사항 및 별첨 내역과 같이 지출원인행위액 중 미지출액을 초과하는 사고이월 또는 지출원인행위액 중 미지출액에 부족한 사고이월을 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제1호" 를 지키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사고이월시 부대경비 이외의 예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 조치인 지출원인행위를 하시기 바라며, 지출원인행위액 중 미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고이월 조치하시기 바람.

○ 첨언하여, 당해연도 예산인 경우,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경우 우선 명시이월 조치하여, 사고이월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라며,

○ 추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고, 처리결과는 결산 주무부서의 실과소원 및 읍면 통보로 갈음처리 하시기 바람.

사고이월 과다 및 부족액 발생

(단위:천원,%)

추진 부서	사 업 명	통계목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원인행위액 중 미지출액	사고이월	문제점
관광과	지역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연구 용역비	433,005	379,005	**54,000**	57,301	이월액 과다
	DMZ평화의길 조성사업	시설비	1,038,111	874,066	**164,045**	574,517	이월액 과다
투자 유치과	DMZ생태관광 자원화 사업	시설비	0	0	**0**	250,000	이월대상 없음
	전곡역 주변 활성화 사업	시설비	5,634,585	4,522,709	**1,111,876**	164,419	**이월액 부족**
	전철역 주변 활성화 사업	시설비	6,349,149	4,682,042	**1,667,107**	266,062	**이월액 부족**
	연천역 역세권 교통 인프라	시설비	4,343,834	3,446,822	**897,012**	49,897	**이월액 부족**
	민통선출입통제	시설비	87,239	18,762	**63,477**	5,401,096	이월액 과다
건설과	석장- 동중 확포장	시설비	3,622,698	3,093,324	**529,374**	127,451	**이월액 부족**
	군도 1호선 확포장	시설비	942,031	590,775	**351,256**	34,806	**이월액 부족**
	군도 9호선 확포장	시설비	1,729,480	1,295,777	**433,703**	3,900	**이월액 부족**
	도로건설 관리계획	시설비	136,435	89,562	**41,873**	36,029	**이월액 부족**
	재이용수 설치사업	시설비	972,600	678,120	**294,480**	71,400	**이월액 부족**
도시과	연천도시 계획도로 중1-1 호선 개설	시설비	4,351,815	3,112,489	**1,239,326**	233,076	**이월액 부족**
	연천도시 계획도로 중1-15호선 개설	시설비	1,825,315	1,541,078	**284,237**	200,000	**이월액 부족**
	접경지역 빈집활용 (백의1리)	사무 관리비	0	0	**0**	15,391	이월대상 없음
	“	행사실비 지원금	0	0	**0**	3,000	이월대상 없음
	“	시설비	1,825,315	1,541,078	**284,237**	200,000	**이월액 부족**

[8] 마무리 추경 등 늦게 성립된 예산의 명시이월 적용 검토 철저 [개선]

[현황 및 문제점]

(단위:천원,%)

추진부서	사업명	당초 예산액	마무리 추경 증액	최종 예산액	추경예산 조치사항	명시 확정일
축산과	2021년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	1,125,157	67,650	1,192,807	명시이월	2022.1.10

○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족분 67,650천원을 마무리추경(2021.12.3.)에 확보한 후, 당년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예산부서에 명시이월 의뢰(2021.12.27.)하였는바, 예산부서에서는 2022년 1월 10일자로 확정 통보하였음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1항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으나,

○ 위 예산의 명시이월은 2022년 1월 10일에 확정됨에 따라, 2022년도 연천군 세입·세출 예산(당초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였으며,

○ 축산부서에서는 2022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명시이월을 요구하므로써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기회를 실기 하였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1항에 따르면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명시이월비로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예산부서에서는 다음연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명시이월 조서를 제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의회승인의 절차를 득하시고, 특히 마무리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 완료되기 어려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니 이월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 사업부서에서는 당초예산이 확정되기 전 명시이월을 요구하므로써 당초 예산서를 통하여 의회 승인 절차를 득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9] 레클레스 문화마을 경상적 보조관리 미흡 (개선)

[현황 및 문제점]

(단위:천원)

사업내역	보조금지급 결정액	집행액	변경증감	비고
계	200,000	200,000		
레클레스문화마을 추진단운영	27,500	8,361	△19,139	
문화마을조성실행계획	20,000	14,416	△5,584	
문화마을기반구축	85,000	141,045	56,045	
체험프로그램개발및운영	20,000	10,340	△9,660	
마을해설사양성및워크샵	47,500	25,838	△21,662	

○ 「연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19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사업이 변경될시에는 동 조례 2호에 의거” 변경사용을 연천군에 득한후 사용함에도 상기 현황과 같이 4개분야에서 56,045천원을 이행치 않고 집행하였음.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에는 동 조례 20조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수행상황등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비 변경시에는 사전승인 등을 받도록 실시하고 사업효율을 증대할수 있도록 개선 바람.

[10] 세입예산 세수 추계 미흡 (권고)

[현황 및 문제점]

(단위:백만원)

과 목	세입예산액	실제수납액	미 편성액	비율	비고
지방세	59,584	62,045	2,461	4%	
경상적세외수입	15,032	16,048	1,016	6%	
임시적세외수입	24,381	24,902	521	2%	
계	98,997	102,995	3,998		

○ 2021년도 세입예산을 분석한 결과 임시적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나, 지방세분야에서는 2,461백만원,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1,016백만원이 과소하게 세입예산 편성하여 세수추계가 미흡함,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입추계를 매 추경시 충분한 실태파악을 실시하고 시계열분석하여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군 세입예산이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 권고함.

[11] 농업정책사업비 추진 예산관리 미흡 (권고)

[현황 및 문제점]

(단위:천원)

사업명	예 산 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고
	계	도비	군비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운영비)	235,000		235,000	115,346	119,653	49%	
마을공동급식지원	54,375	9,768	44,607	27,187	27,188	50%	

○ 상기와 같이 예산성립후 여러 가지 사유로 예산 미집행이 50%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한바,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은 사업추진 부진시 추경예산에 삭감등 조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미조치 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영이 부족함.

[개선 및 권고사항]

○ 사업대상과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미집행사유 발생시 추경에 예산 삭감등 효율적 운영토록 개선 권고함.

[12] 환경폐기물 예산관리 미흡 [개선]

[현황 및 문제점]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도비	군비			
생활계유해폐기물 위탁처리	20,000	0	20,000	1,458	18,542	
영농폐기물(농약빈병)보상금	20,000	0	20,000	8,203	11,796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15,420	4,626	10,794	0	15,420	
계	55,420	4,626	50,794	9,661	45,758	

[현황 및 문제점]

○ 환경개선사업은 군민들에게 혜택을 많이주고 지역환경을 개선시켜 청정 연천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성립예산이 전액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는바 상기와 같이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으며,

○ 공중화장실 안심벨 사업은 우리군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에게 호감을 주는 사업임에도 설치하지 않아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초래되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주민과의 밀접한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전액이 투자되어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이 되도록 읍면별 이장회의 참석 홍보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전액 집행되도록 노력 바람.

[13]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개선 [개선]

[현황 및 문제점]

(단위:천원)

회계별	구 분	예산현액	다음년도이월액	비율(%)	비고
일반회계	계	290,426	75,175	26%	
	명시이월		61,552		
	사고이월		813,623		
공기업특별회계	계	90,938	2,721	3%	
	명시이월		3,442		
	사고이월		2,379		

※예산현액은 명시 사고・이월예산만 산출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사업의 시기 조절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 이행.보상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2021회계연도에 편성된 많은사업을 연내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가 75,175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6%를 차지하고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에는 사업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여 당해 연도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14] 장애인 지원 센터 지원금 관리 미흡 (개선)

[현황 및 문제점]

(단위:천원)

지출항목		당초집행계획	집행액	변경증감	비고
계		150,000	150,000	0	
인 건 비		109,619	109,619	0	
운 영 비		26,399	26,399	0	
재산조성비		0	2,040	2,040	
사업비	소 계	13,981	11,941	△2,040	
	장애인상담	1,000	1,000	0	
	장애인역량강화	3,441	2,891	△550	
	장애인정서지원	3,640	2,150	△1,490	
	장애인인식개선	4,900	5,846	946	
	장애인연구개발	1,000	53	△946	

○ 「연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업이 변경될 시에는 동 조례 2호에 의거 변경사용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에도 상기 현황과 같이 5개 분야에서 2,040천원의 사업비를 변경승인을 득하지 않고 재산조성비로 집행하여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부진할 수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에는 동 조례 2호로 규정한 바와 같이 지원금 관리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비 변경시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효율을 증대할 수 있도록 바라며,

○ 예산과목 설정에도 지원금 성격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인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기 개선하시기 바람.

[15] 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 (권고)

[현황]

행정담당관 외 4개과 (단위:백만원)

구 분	전략 목표수	성 과 목 표					결 산 액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 수	지 표 수	초과달성	달 성	미 달 성	
계	25	70	169	27	107	31	628,660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1회계연도의 성과보고를 작성하였음. 「좋은 사람들의 평화도시 연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 결과는 위와 같음.

○ 성과보고서 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검토한 바 목표설정 후 적극적인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목표 설정하거나 계획변경에 따른 계획수정, 실적산출 있어서도 누락 등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함.

[개선 및 권고사항]

○ 당해연도 예산액이나 목표가 변경되었을시에는 내역을 반영(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성과지표 설정 시 도전적인 목표 및 측정산식의 적정성 검토 등 적극적인 성과계획수립 바람.

○ 향후 정책목표와 연관된 성과지표를 추가 및 변경(부서별 참고)하여 추경예산 반영 시 계획변경토록 개선 권고함.

붙임: 정책목표와 연관된 성과지표 추가 및 변경대상 1부.

정책목표와 연관된 성과지표 추가 및 변경대상

부 서 별	성과지표명	성과보고서	개선 및 수정사항	비 고
행정담당관	주민주도형 사업 발굴추진 (건)	목표 10건 실적 4건 40%	○ 선택과 집중추진으로 목표가 4건으로 변경되었으나 계획변경 미조치	
투자유치과	인구유입시책 건수 (건)	20년목표 800건 21년 목표 2,850건 실적 595건 달성률 21%	○ 전년보다 과도한 목표설정으로 달성 지난으로 ○ 적정목표로 개선대상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지원사업(회)	목표 2 실적 0	예산액: 306,780천원 집행액: 303,556천원 ○ 실적누락	
건설과	○ 국유재산 민원처리 신속성 ○ 하천정비율	목표 82 실적 0 목표 80 실적 0	예산액: 10,000천원 집행액: 3,730 - 실적누락 예산액: 4,746,222천원 집행액: 3,768,003천원 - 실적누락	
문화체육과	○ 도단위 이상 대회 개최	목표 10 실적 5 달성률 50%	○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시 계획변경하여 추진하여야하나 미시행	

[16] 통합계정기금 · 재정안정화계정기금의 효율적 관리 미흡 (개선)

[현황 및 문제점]

(단위:천원)

년도 / 기금종류	2019년	2020년	2021년
통합계정 (예탁금)	6,810,028 (6,114,000)	9,909,751 (3,573,000)	12,275,568 (2,382,000)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액)	54,002,630 (0)	46,005,741 (13,200,000)	119,898,226 (6,000,000)

○ 위의 표에서 알수 있듯이 통합계정 기금은 고유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출금액을 증대시켜야 함에도 실제적으로는 각 기금에서 예수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금액이 군금고에만 예치되고 있는 상황이며,

○ 재정안정화계정은 코로나 군민지원금으로 총 19,200,000천원을 지급액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 군금고(800억원)에 예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 차후에는 두 기금의 예탁액(920억)을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17] 보전수입 항목 구분 표기 [개선]

[현황 및 문제점] (단위:천원)

년도 / 보조금	2021년(세입)	2020년(이월)	비 고
국고보조금	7,249,793(+401,815)	6,847,978(-401,815)	
시도보조금	2,484,528(-308,000)	2,792,529(+308,000)	
합계액	9,734,322(+93,815)	9,640,507(-93,815)	

○ 2021년 결산서 세입예산보다 실제 수납액이 각각 국고보조금은 401,815(천원)을 과대 계상 되었고, 시도보조금은 308,000(천원)은 과소계상되어 있다. 또한 그 차액 93,815(천원)은 원인불명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민간부담교부액 초과반납액이 599,814천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민간부담교부액 초과반납액은 결산서상 보전수입의 다른항목으로 구분표기(예를 들면 '보조금등 반환금')으로 표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액 적정성 제고 (건의)

[현황 및 문제점]

(단위:원)

구 분 특별회계명	내 용			비고
	2020년말	2021년 초	차이금액	
의료급여특별회계	48,976,596	63,448,726	14,472,130	
주차장사업특별회계	526,649,585	507,613,895	19,035,690	
발전소사업특별회계	277,620	0	277,620	
장기미집행특별회계	193,837	0	193,837	
댑주변지역특별회계	23,380,810	23,193,000	187,810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발전소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 댐주변지역특별회계등에서 전년도 이월된 순세계잉여금과 2021년도 결산서상 세입항목 중 순세계잉여금의 금액이 불부합하게 집계되어 있는 상태임.

[개선 및 권고사항]

○ 차후엔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집계하고 이월하여 차년도 결산서에 합당한 순세계잉여금이 세입항목으로 집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9]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추계액 누락 [개선]

[현황 및 문제점]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세부내역 (단위:원)

구 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 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계
설정대상 인원수(명)	130	1	-		131
전년도말 퇴직금 추계액(A)	6,977,194,586	21,025,829	-		6,998,220,415
당기 퇴직금 지급액(B)	580,018,070	-	-		580,018,070
당기 퇴직금여 설정액(C)	-	2,516,762	-		2,516,762
당기 퇴직급여 충당부채환입액(D)	829,450,403	-	-		829,450,403
계(A-B+C-D)	5,567,726,113	23,542,591	-		5,591,268,704
차감 퇴직금 전환금및예치금	(96,621,640)	(16,549,880)	-		(113,171,520)
차감잔액	5,471,104,473	6,992,711	-		5,478,097,184

○ 위 도표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2021회계연도 결산서상에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세부내역에 지방공기업특별회계 퇴직급여 충당 부채금액 1,089백만원이 누락되어 있는 상태로 집계되어 있다.

[개선 및 권고사항]

○ 차기 결산진행절차에서 누락된 지방공기업특별회계상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상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는 추가설정,집계하기를 요망함.

[20] 기금일계표 불부합 [권고]

[현황 및 문제점]

내용 / 회계분류	결산서(기금운용명세서)		세입/세출 일계표	
	수입	지출	세입	세출
남북교류협력기금 (차이금액)	1,448,003천원 (-1,950,000천원)	578,687천원 (-1,950,000천원)	3,398,003천원 (+1,950,000천원)	2,528,687천원 (+1,950,000천원)
농기계임대기금 (차이금액)	4,061,200천원 (-48,660천원)	2,978,210천원 (0)	4,109,860천원 (+48,660천원)	2,978,210천원 (0)
식품진흥기금 (차이금액)	70,659천원 (+1,807천원)	31,508천원 (0)	68,852천원 (-1,807천원)	31,508천원 (0)
향토장학기금 (차이금액)	1,154,109천원 (-8,023,736천원)	800,000천원 (-8,140,000천원)	9,177,845천원 (+8,023,736천원)	8,940,000천원 (+8,140,000천원)

○ 결산서상의 기금회계에서 기금운용명세서에서 명시된 2021년도 귀속 수입금액/지출금액과 2021년도 귀속 세입세출 일계표상의 세입/세출금액이 불부합하게 나타나 있다. (위의 표 참조)

[개선 및 권고사항]

○ 기금회계상의 기금운용명세서에서 집계되는 수입/지출금액은 총계기준이 아닌 순계기준으로 작성되는 바,
결산서 첨부서류상의 세입/세출금액 또한 순수한 단해년도 순계기준에서 산출된 금액이니만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행해진 예탁금 지출금액과 회수급액은 포함시키지 않고 결산서를 작성하면 상호간의 비교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차제에 결산시점에서 유념하길 요망함.

Ⅳ.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 전년도 결산검사 조치내용

구 분	개선 및 권고사항					비고
	합계	개 선	권 고	건 의	시정	
합 계	**25**	**10**	**9**	**6**		
세입 · 세출분야	10	3	4	3		
예산분야	7	2	3	2		
특별회계, 기금	4	2	2			
기타(채권,채무 등)	4	3		1		

○ **세입 · 세출분야**

-**세입분야**에서 적극적 납부 독촉 및 자진 납부유도 등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힘쓰며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체납관리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미납자 대상 적극적 납부 독려, 다양한 세수 추계 분석프로그램을 통하여 세수 추계를 보다 정확성을 기하시고,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계획의 정확한 판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권고함.

○ **예산분야**에서 예산편성 시 사업별 성과분석 보고서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신중한 예산편성 및 자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국.도비 보조내시 비율에 따른 정확한 정산이 이행되도록 조치하고, 돌발상황 발생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하여 미시행사업을 최소화하고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가 반영되도록 권고함.

○ **특별회계·기금분야** 중 특별회계 담당자들의 업무연찬이 필요하며, 출납폐쇄기한 및 회계연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규정을 준수하고, 통합관리기금 일반예탁금에 대하여 총괄 조성금액으로 구분 표기함으로서 연속성 있게 관리해 주시길 권고함.

○ **기타분야** 에서는 소송 건수가 다수 발생하고 패소율이 높은 것은 소송전 행정처리시 법규 연찬이 완벽하지 못하여 발생한다고 사료되어 소송이나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는 중요 행정의 집행 시 최종 집행전에 분야별 전문변호사 자문을 권고함.